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(마을버스운송사업)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7일

서대문구청장

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선정

나. 운행계통

노선 번호	기·종점	차량 대수	운행거리	운행시간	운행횟수	배차간격	첫차 시간	막차 시간
서대문 15번	증산역~ 명지대후문	3	4.0km	35분	90회	10~12분	06:00	24:00

다. 사업개시 :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로 등록 후 3개월 이내

2. 사업신청 자격

가.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4조,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

나.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6조의 결격사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자

다.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,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법상 서울특별시 거주자

라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

3. 사업 시행조건 및 운행계통 노선도

- 『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안내서』 참조

4.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공고: 2019.11.7.(목) ~ 11.20.(수)

5. 계약방식: 협상에 의한 계약

6. 공고매체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공고

7. 사업신청서 접수: 2019. 11.21.(목) ~ 11.25.(월) 09:00~18:00

가. 제출장소 :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(4층)

나. 접수방법 : 방문 접수 (우편, FAX, 전자메일 접수 불가)

다. 제안서 제출

-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제안서 3부를 제출

-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은 『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선정안내서』 참조

8. 제출서류

① 마을버스 운송사업 신청서

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.

③ 서약서 1부.

④ 인감신고서 1부.

⑤ 사업제안자 일반현황 1부.

⑥ 임원 인적사항 1부.

⑦ 출자자 구성현황 1부.

⑧ 운송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1부.

⑨ 사업실적 증명서 1부.

⑩ 사업제안자 재정상태 1부.

⑪ 재원확보 계획서 1부.

⑫ 차량 확보계획서 1부.

⑬ 운송사업 부대시설 확보 계획서 1부.

⑭ 운수종사자 채용 및 복지향상 계획서 1부.

⑮ 고객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향상 계획서 1부.

⑯ 제안서 3부, 제안서 수록 전자파일 1개.

9.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

가. 일시(제안서 평가위원회) : 2019. 11. 27.(수)(예정)

나. 제안서 평가방법

-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.
- 사업제안 대표자가 사업제안서(PPT)를 심사위원회에서 10분 내외로 설명하고(접수순), 10분정도 질의응답을 실시한다.
- 제안서 심사는 사업계획, 재무 및 투자계획, 시설물 설치 및 차량 확보계획, 운수종사자 채용 및 복지향상 계획 등을 평가표에 의거 평가한다.
- 평가요소별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를 종합 집계하여 제안업체별 총점을 산출한다.
- 제안서 심사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,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로 한다. 이 경우 최고점수·최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- 위원별 산출된 총점을 종합 집계하여 3순위 까지 선정하고, 최고점수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, 2~3순위자는 예비자(협상대상자 또는 예비협상대상자)로 한다.
- 제안서 신청자자 1개 업체일 때에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때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-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때에는 재선정 공고에 부칠 수 있다.

10. 협상적격자 통지

-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지한다.

11. 협상 절차

- 가. 서대문구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,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.
- 나.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,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.

- 다. 우선순위 협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협상이 완료되면 즉시 서대문구에 사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,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차순위 대상 업체와 협상을 완료한 후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다.
- 라.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서대문구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.
- 마.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선정 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에 부친다.

12. 협상 진행

가. 사업제안서 기반 협상

-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내용, 이행방법, 이행일정 등 사업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.
-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.

나. 협상기간

-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.
- 서대문구는 당해 사업의 규모, 특수성,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다. 협상결과 통보

- 서대문구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 서면 통보한다.

13. 세부실행계획서 제출

- 가.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실행계획서를 서대문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의 사업내용, 수행일정, 이행방법,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에서는 수정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협상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다.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는 서대문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수정이나 조정의 경우, 수정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4. 기타사항

- 가. 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를 근거로 한다.
- 나.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제안서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.
- 다.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협상대상자의 최종순위를 제외한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, 논의내용, 평가위원별 평가 내용, 평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.
- 라. 본 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안내서」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,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.
- 마.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(☎02-330-1839)로 문의한다.